#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(강선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22-134 발의연월일: 2022. 11. 4.

발 의 자: 강선영(1명)

찬 성 자:고찬양,조기만,전철규,

최동철, 박성호(5명)

#### 1. 제안이유

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·축제·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3조)

- 나. 적용범위, 안전관리계획,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긴급안전조치,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~ 제8조)
- 라.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공연법」, 「공연법 시행령」

나. 입법예고 : 2022. 11. 7. ~ 2022. 11. 14. 결과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, 축제 등의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을 보호하고, 문화·예술·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옥외행사"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, 축제 등으로,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.
  - 가.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 또는 구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(이하 "출자·출연기관"이라 한다)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  - 나. 구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(이하 "후원"이라 한다)한 행사다.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

- 2. "안전관리"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.

- 1.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
- 2.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, 체육 등의 옥외행사
- 3.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행사
- ② 제1항 각 호에서 1,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「공연법」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관련법에 따른다.
-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5조(안전관리계획) ①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- 1. 옥외행사 계획서(일시, 장소, 주요내용, 순간 최대 관람객 등)
-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
- 3.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
- 4.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
- 5.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(이하 "주최·주관 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구청장 및 출자·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 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2조제1호다목의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제6조(안전점검) ①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,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주최·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 다.
- 제7조(긴급안전조치)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 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야 한다.
- 제8조(안전관리요원) ①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  -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,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
  - 2.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(모자, 복장 등)
  - 3. 응급·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
  - ③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·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기관 협력) ①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붙임

## 관계 법령

## □ 「공연법」

- 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  -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, 안전관리조직,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「공연법 시행령」

## 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

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